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연월일 2005. 12.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보조 사업 범위 지정(안 제2조)
- 나.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방법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사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5조 내지 제9조)
- 라.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안 제10조)
- 마. 보조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보고 및 검사 규정(안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나. 예산조치 : 연간 770,000천원(시세 수입의 약3%)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05. 11. 10. ~ 11. 30.)결과 제출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사천시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 기간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사천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4인 이내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안)이 사천시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는 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